

# 2021 세외수입 특정감사 결과 보고

##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2. 17. ~ 2. 23. (5일간)
- 감사범위 : 2018. 8 1. ~ 2020. 12. 31. 세외수입 전반

## □ 감사결과 : 지적건수 6건

시정	주의
2	4
※ 재정상 조치 : 0건 / 0,000,000원 (부과·환수)	

**감 사 관**  
(감 사 팀)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이며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은 그 항목이 많고 각 개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부서에서 징수 관리함에 따라 지방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와 부과·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 세입의 중요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 및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안을 마련하고,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1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부과대상 누락, 부과액 산출근거 및 산정산식 적용의 적정성, 고지철차 이행 및 과태료 등 감면 적정성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 여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가산금 부과, 체납자 재산조회 등 압류·결손 처분 등 체납 관리 적정 여부, 세외수입 횡·유용 여부, 제도 및 법령 미비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무에 대하여 본청(도시국, 교통국 제외), 평생학습원(도서관 제외)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에 앞서 기존 감사 지적사항, 타시군 감사 사례 및 시민의견 수렴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세외수입처리에 관한 대상부서 자료 제

출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enis) 자료 검토를 거쳐 2021. 2. 17.부터 2021. 2. 23.까지 5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부서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소명 기간을 거친 후 이를 검토하여 감사결과에 반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중대한 과실 및 청렴의무 위반 비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명, 원)

시정	주의
2	4
※ 재정상 조치 : 0건 / 0,000,000원 (부과·환수)	

이에 총 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등 조치하고, 0건 0,000,000원의 부과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하였다.

지적사례의 주요 원인으로는 관련법규 및 지침에 대한 연찬과 숙지부족, 선례 답습적 업무처리, 소극적인 태도 등이 대부분으로 지속적 직무교육, 감사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정·개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수사례로는 2020년 징수과에서 부과·징수·독촉 등 절차,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된 세외수입 업무해설집을 전부서에 작성·배포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점으로, 전부서에서는 업무해설집을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한다면 부정과 오류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감사결과 처분계획

### □ 처분요구내역 총괄(구 서식)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계	부과	환수	계	징계	훈계
6	2	4	0	0	0	-	-	-

### □ 처분요구목록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구 분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총 6건		0건, (0,000,000)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업무 처리 소홀	시정	부과 0건(00,000)		
2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세입조치 소홀	주의			
3	☆☆☆☆수당 등의 환수절차 미이행	시정	환수0건(0,000,000)		
4	★★★★부담금 가산금 안내 및 부과 부적정	주의			
5	과태료 부과관리 부적정	주의			
6	징수결정결의 이행 소홀	주의			

## 3. 감사 지적 사항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업무 처리 소홀	NO. 1
---	----------------------------	-------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에서는 행정 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조례 제 34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

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 ◇◇◇과(舊 ◆◆과)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업무를 하면서 연간 사용료를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납부토록 하여야 함에도 사용개시일 이후에 부과하여 최소 ○개월에서 최대 ○개월 이상 지연 부과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과에서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해지(해제)되면 해지 연도의 대부료는 해지일자까지 일할 계산하여 재산정 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읍 ■■리 ○○번지 외 ○필지 상의 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2019년 대부료를 1월중에 부과하고 수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중 대부자로부터 대부계약 해지 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해지일자까지의 대부료를 재산정하여 납부토록 했어야 하나 전액 감액하여 준 사실이 있다.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사용료 부과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재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대부료 미 부과 내역(●●●)에 따른 재산정 금액 00,000원을 부과·징수 (시정)

■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본청 내 시설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주체와 절차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여 업무 추진(권고)

<b>2</b>	<b>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세입조치 소홀</b>	<b>NO. 2</b>
----------	-------------------------------	--------------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를 조달청에서 발급받아 유류를 구입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2019년부터 연1회 결제액의 1.1%를 캐시백 포인트로 적립하여 등록된 환급계자로 자동 환급하고 있다.(2019년 이전에는 청구한 경우에만 지급)
- 따라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캐시백 포인트가 환급계좌로 환급되면 지체 없이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하나, △△△과, ▲▲▲과,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환급 포인트를 감사일 현재(2021.2.17.)까지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철저 (주의)

<b>3</b>	<b>☆☆☆☆수당 등의 환수절차 미 이행</b>	<b>NO. 3</b>
----------	----------------------------	--------------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수당(7만원/월), ☹☹☹수당(3만원/월), ☹☹♣♣♣♣♣♣ 복지수당(3만원/월) 및 사망위로금(15만원/1회, 그 유족 및 가족 제외) 지급할 수 있으며, 제13조제1호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나 사망위로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지급 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0,000천원/○○명), ☹☹☹수당(000천원/○○명), ☹☹♣♣♣♣♣♣ 복지수당(000천원/○○명)을 지급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철저히 하고 환수 등의 절차를 조속히 시행 (시정)

<b>4</b>	<b>★★★★부담금 가산금 안내 및 부과 부적정</b>	<b>NO. 4</b>
----------	--------------------------------	--------------

- 「★★★★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개정 2020. 3. 24.)되어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법령 개정일 이후에도 대상자에게 ★★★★★부담금 납부 고지 공문 발송 시,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법 개정 전 내용(납부기한 경과 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음)으로 안내하였으며, 납부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금액에 부담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괄 부과하여 발급(이러한 경우 납부기한을 1일만 넘겨도 가산금 최대금액을 납부하게 됨)한 사실이 있다.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철저 (주의)

5	과태료 부과관리 부적정	NO. 5
---	--------------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기간 적용 부적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르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

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용품 및 ☒☒☒☒용품 안전관리법」 및 「☒☒☒☒제품 안전 특별법」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이후 과태료 재부과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감경부과 기간이 아님에도, 현황과 같이 「☒☒☒☒용품 및 ☒☒☒☒용품 안전관리법」 제30조를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대표 ●●●●) 등 총○○건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기간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총0,000,000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

**나.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책정 소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용품 및 ☒☒☒☒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생략)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고,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 또한, 「☒☒☒☒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생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고, 다만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줄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해당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를 조사 및 검토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인하여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부과가 가능한지도 검토 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여야 했다.

- 그런데, ♠♠♠♠♠과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검토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의 감경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라면, 의견제출기한 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및 검토 없이 선 예고하고 의견제출 후에서야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고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로 50% 감경 재부과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20% 감경부과 또한 부적정하게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철저 (주의)

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는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처분한 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 후 미수납된 건에 대하여 감경된 부분에 대한 본 부과 처분을 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징수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부과처분 및 독촉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철저 (주의)

6	징수결정결의 이행 소홀	NO. 6
---	--------------	-------

- 「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남양주시 2020 세외수입 업무해설집」에 따르면 징수결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위임)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금의 납입(또는 납부)의무자를 확정시키고, 확정된 납부의무자에게 금전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행위이며 징수결정은 징수관(또는 분임징수관)만이 할 수 있고, 징수결정 없이 징수 및 수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또한 징수결정시에는 징수결의서 작성, 징수부 등재 후 해당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고 징수결의서 작성 시 징수결정 사유를 첨부 하여야하며, 단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 해야 할 사항의 예시로 과태료 감경수납 후 징수결의 등을 정하고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